

판매, 인도 및 임대에 관한 일반 거래조건

제 1 조 총칙

- 1.1 본 거래조건은 고객 ("고객")과 판매인, 임대인, 및 작업등급인으로서의 도카코리아 유한회사(이하, "판매인" 또는 "임대인") 사이의 계약 일체 (예: 판매, 인도, 및 임대 계약 또는 설계 및 건축 서비스(projection service) 관련 계약)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합니다.
- 1.2 판매인의 계약을 고객이 승낙하거나 고객이 판매인에 대하여 발주하는 시점에, 고객은 본 거래조건을 유효성을 수락하고 본 거래조건을 해당 거래관계에 적용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객과 판매인이 별도의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들은 고객의 일반구매조건 등은 고객과 판매인 사이의 거래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 1.3 고객은 고객과 판매인간에 체결되었거나 체결되는 계약 내용을 계약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이를 기밀로 유지하며, 이는 판매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도 적용됩니다. 본 제1.3조의 의무는 본 계약이 해지된 후 또는 계약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제한 없이 유지됩니다.

제 2 조 계약 체결

- 2.1 고객의 주문에 대하여 판매인이 이를 서면으로 수락하여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 2.2 본 거래조건에 수정, 개정, 추가 등 본 판매인의 서면 확인에 의해서서만 이루어집니다.
- 2.3 판매인의 직원이나 기타 판매인의 협력업체가 하는 의사표시는 판매인의 서면 확인이 있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제 3 조 가격 및 지급조건

- 3.1 판매인의 가격은 정가이며, 세금을 포함하지 않고, 운송비, 보험료등을 제외한 공장도(Ex-Works) 가격입니다..
- 3.2 환여음에 의한 대금지급은 판매인이 이에 별도로 동의하고, 판매인의 수령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다만, 고객의 물품대금 지급의무는 판매인이 환여음에 따라 실질적으로 대금을 지급 받을 때에 이행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판매인이 자신의 계좌에서 당해 대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날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 3.3 고객이 구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책임일부와 관계없이, 연 10%의 연체이자를 부담합니다. 고객은 판매인에게 채권추상 및 기타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부담합니다. 판매인의 기타 배상청구권은 본 제3.3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 4 조 소유권 유보

- 4.1 판매인이 공급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구매대금 및 추가 비용 등 대금과 비용 일체가 완납될 때까지 판매인에게 속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품"에는 특허, 문서, 설계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예: 프로그램)를 포함하는 모든 유형 및 무형 물품이 포함됩니다.
- 4.2 소유권의 유보는 판매인이 공급한 물품을 가공하여 생성되는 제품에도 적용되며, 물품이 가공, 결합 또는 혼합되는 경우, 판매인은 그 결과로 생성되는 제품에 대한 공동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경우, 고객이 동 생성된 제품에 대한 보관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합니다.
- 4.3 고객은 소유권의 유보 하에 공급된 물품을 제3자에게 대여 또는 보증으로 제공하거나 여하한 방법으로 제3자를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없으며, 소유권이 유보된 물품의 재판매는 판매인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동의 하에서만 허용됩니다.
- 4.4 고객은 제4.3조에 반하여 판매인에 대한 소유권이 유보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은 판매인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판매인에게 자동적으로 양도되고 판매인은 동 채권을 추심함으로써 물품대금 채권에 총당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채권의 양도사실을 자신의 고객들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자신의 장부 및 미지급 항목 목록 등에 필요한 기재를 하며, 판매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신의 고객들의 이름/주소 및 재판매로 인해 발생한 채권의 잔액 및 금액을 판매인에게 통지합니다. 고객은 소유권이 유보된 물품의 재판매를 통하여 지급 받은 대가 일체를 지체 없이 판매인에게 이전합니다.
- 4.5 고객이 유보된 물품에 대하여 절권이 설정되거나 달리 제3자에 의해 사용되는 경우, 고객은 제3자에 대하여 판매인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이러한 사실을 판매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고객은 판매인의 소유권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일체를 판매인에게 배상합니다. 고객은 판매인의 요청이 있으면 소유권 보호 및 실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 일체를 자신의 비용으로 판매인에게 제공합니다.
- 4.6 고객이 물품대금의 지급을 불이행하는 경우, 소유권이 유보된 물품은 판매인의 요청 즉시 판매인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고객이 이와 같은 반환요청에 즉시 응하지 않는 경우, 판매인은 소유권이 유보된 물품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반환 또는 회수와 관련된 운송비용 및 위험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위와 같이 물품의 반환 또는 회수되었다거나 명시적인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고객은 계약상 의무와 책임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매인은 반환 받은 또는 회수한 물품을 다른 자에게 판매하여 고객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총당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인도

- 5.1 판매인이 고객에게 고지한 인도기간 및 인도일은 추정적인 것이며 항상 현장도착 차상도 인도일 의미입니다. 제5.3조에 언급된 이외의 사유로 인도일 또는 인도기간이 2주 이상 지체되는 경우, 고객은 적어도 2주의 사전통지를 통하여 추가기간을 정하고, 위 추가기간 내에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판매인의 일부 불이행이 있는 경우, 고객은 불이행된 범위 내에서 계약의 일부만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기타 여하한 청구는 배제됩니다.
- 5.2 물품의 인도는, 물품이 인도일자에 또는 합의된 인도기간 말일까지 판매인에 의해 판매인의 작업장에서 발송 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 또는 판매인이 직접 발송하기로 서면합의한 경우, 위 일자 또는 기간에 발송이 개시된 경우, 기한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 5.3 판매인 및 그 협력업체의 작업장으로부터 정시 또는 기한 내에 물품을 인도할 수 없게 하는 불가항력 또는 예측 불가능한 장애가 발생하고, 그것이 판매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인도기간 또는 인도기일은 적절히 연장됩니다. 이 경우 고객은 판매인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 보상 및/또는 해제 등 여하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5.4 고객이 지급일이 도래한 물품대금, 연체이자 및/또는 기타 비용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기간 동안 판매인은 물품을 인도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5.5 고객은 판매인의 일부 인도를 수락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 6 조 문서 및 소프트웨어

고객은 본 계약에 기재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판매인이 제공한 문서(예: 설계 및/또는 프로젝트 문건), 소프트웨어 및 이에 포함된 노하우(know-how)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제 7 조 위험부담 및 발송

- 7.1 판매인이 물품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한 때 물품에 대한 손실 및 손상 위험은 고객에게 이전됩니다. 판매인에 의한 발송이 합의되지 않은 한, 고객은 물품을 즉시 인수하여야 합니다.
- 7.2 고객은 운송 중에 손상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판매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8 조 하자담보 및 책임

- 8.1 고객은 인도된 물품을 지체 없이 검사하고 결함이 있는 경우 물품의 인도 또는 서비스 제공 후 적어도 8일 이내에 (또한, 이를 가공 또는 이용하기 전에)하자의 정확한 세부내역을 명시하여 즉시 판매인에게 통지합니다. 이는 불충분한 물품인도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숨은 하자도 위와 동일하게 발견되거나 발견될 수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8일 이내에 이를 판매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하자가 발견에 통지되지 않는 경우, 당해 하자에도 불구하고 관련 물품/서비스는 고객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8.2 위 제8.1조에 따른 고객의 하자통지는 고객은 물품대금 지급의무로부터 면제하지 않습니다. 판매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고의 또는 의무, 특히 지급의무를 이행하였으리, 하자내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지정 기간 내에 이를 통지하였음을 전제로 합니다.

- 8.3 위 제8.1조 하의 고객의 하자통지에 따라 판매인에 의하여 물품에 하자 또는 손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판매인은 판매인의 선택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물품을 교체 또는 수리/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계약의 취소, 가격할인, 또는 금전적인 보상 등 여하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8.4 고객이 하자 등의 사유로 인도된 물품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고객은 판매자가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판매자가 요청하는 방법으로 이를 적절히 하역, 저장, 및 보관합니다.
- 8.5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판매인은 청구 원인을 불문하고 매우 중대한 과실 및 고의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고객의 직접적인 손해로 한정됩니다. 간접적인 손해, 부수적인 손해, 결과적인 손해 및 제3자의 청구에 따른 손해(일상이익, 상실기회, 조업중단으로 인한 손해 포함) 등 여하한 특별 또는 간접손해에 대한 보상 등은 배제됩니다. 판매인은 판매인이 직접 고용한 자의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판매인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판매인의 협력업체 또는 운송자의 과실에 대한 판매인의 책임은 배제됩니다.
- 8.7 고객은 자신의 고객들이 본 거래조건 하의 판매인의 책임제한의 완전한 적용을 받도록 하며, 그 후속 고객들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 8.8 물품이 고객의 설계, 문서, 또는 지시에 따라 생산된 경우, 고객은 제3자가 제기하는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단독 책임을 부담하며 당해 지적재산권침해를 이유로 판매인에 대하여 제기된 청구와 관련하여 판매인을 일체 면책합니다.

제 9 조 기술지침

- 9.1 물품은 판매인의 기술지침(예: 사용자 정보, 거푸집 도면(formwork drawings) 등)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고객은 하자담보, 손해배상 등 판매인에 대한 여하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9.2 고객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판매인의 기술지침은 이를 자신의 비용으로 취득할 책임이 있습니다.
- 9.3 판매인이 고용한 직원의 기술지침은 판매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면으로 작성된 기술지침에 대한 설명으로 제한되며, 직원이 제공한 그 이외의 정보에 대하여 판매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판매인의 등록된 사무소의 기술담당서무원이 판매인의 서면으로 작성된 기술지침에 대한 설명 이외의 정보, 특히, 특정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법과 같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고객은 당해 부서로부터만 이러한 정보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해제 또는 해지

- 10.1 계약당사자들은 중대한 사유(예: 도산절차의 개시 또는 지급불능, 계약의 중대한 위반, 14일간의 추가 연장 기간에도 불구하고 지급연체) 발생하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0.2 판매인은 판매인의 판단에 따라 계약이행을 불합리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는 그 사유가 일시적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제 11 조 물품 반환

- 11.1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판매인이 제4.1조에 따라 이미 공급한 물품 등은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판매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11.2 반환된 물품이 다른 물품과 명확히 식별되지 않는 경우, 판매인과 고객은 상호합의에 따라 항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와 관련된 제3자의 청구로부터 판매인을 면책합니다.

제 12 조 상계 배제

고객은 판매인에 대한 채권으로 판매인에 대한 채무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존속조항

어떠한 이유로 본 거래조건 또는 고객과 판매인 사이의 개별합의의 한 개 이상의 조항이 무효화되거나 집행할 수 없는 경우,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무효화되거나 집행할 수 없는 조항은 판매인에 의하여 당해 조항이 의도한 목적에 가장 가까운 조항으로 대체됩니다.

제 14 조 이행 장소 및 관할

- 14.1 판매인과 고객간의 계약관계로부터 발생되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의무의 이행지는 [도카코리아에게 적절한 이행장소]입니다.
- 14.2 본 계약의 체결, 이행 등 이와 관련한 고객과 판매인 간의 모든 분쟁은, 판매인의 선택으로, [도카코리아의 본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의해, 또는 제14.3조에 정의된 중재에 의해 해결됩니다. 판매인이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선택하는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이 적용됩니다. 중재판정은 단독 중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거푸집 사업 및 그 부수적인 사업에 대하여 중무한 경험을 가진 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합니다. 중재자는 서술로 하며, 중재언어는 한국어로 합니다.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중재판정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합니다

제 15 조 준거법 및 해석

본 계약은 대한민국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며, 이에 따라 구성 및 해석됩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에 관한 추가 거래조건

제 16 조 수령 및 반환

고객은 임대인이 지정한 임대인의 사업자로 임대물품을 수령하기로 합니다. 고객은 임대계약이 종료된 경우, 물품을 완전히 사용 가능하고 깨끗한 상태로 위 임대인의 사업자로 반환합니다. 고객은 수령 및 반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며, 위에도 따라 임대된 물품이 즉시 반환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된 물품을 고객의 비용 및 위험으로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임대 조건

- 17.1 임대기간은 물품이 임대인에 의해 고객이 사용 가능하도록 준비된 날에 개시하거나, 또는 임대인이 이를 발송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발송 개시된 날에 개시됩니다.
- 17.2 임대기간은 별도의 통지 없이 합의된 기간의 만료로 종료합니다.
- 17.3 고객이 임대기간이 종료한 시점에 반환되지 않는 경우, 고객은 물품이 임대인에게 실제 반환되는 날까지 합의된 추가 임대료를 지급합니다.

제 18 조 손상 및 손실 위험

고객은 전체 임대기간 동안 및 임대인으로부터 또는 임대인에게 물품을 운송하는 동안 임대 물품의 손상 또는 손실에 대한 위험을 부담합니다. 임대 물품이 손상되거나 상당히 손상되는 경우, 임대인은 물품의 표시가격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고객으로부터 청구할 수 있으며, 물품이 손상되는 경우, 임대인은 수리비 또는 상실가치의 배상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임대물품의 구매

고객이 임대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그 구매대금은, 이와 반대되는 고객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관련 물품에 대한 미지급 임대료를 총당하는 데 우선 사용되며,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미지급 임대료, 이자 및 구매대금 등 고객이 당해 물품과 관련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여하한 채무가 변제되기 전까지 고객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